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66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피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식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에 대한 위반 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2개월로 개정하는 등 식품등의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에 기반하여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heosk@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Ⅱ. 제1호 표의 가목 9)를 10)으로 하고,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내용량 변경(내용량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실 표시 대상 식품·축산물에 변경 사실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 정지 15일	품목 제조 정지 1개 월	품목 제조 정지 2개 월
--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